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7 - 14 - 083호

(사건번호 : 201702조사003)

안 건 명 주식회사 케이티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정자동)
대표이사 황창규

의결연월일 2017. 3. 21.

주 문

1. 피심인은 대리점 및 판매점이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3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5,710천명으로 전체시장의 29.2%(‘16.12월말 기준)를,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은 6조 6,584억원(‘16.12월말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27.5%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15,710 (29.2%)	66,584 (27.5%)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나. 이동통신시장 현황

-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관련 조사대상 기간('16.8.1.~10.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5,282,450명이고, 그 중 외국인 가입자 수는 137,311명(2.6%)이었다.
- 피심인의 이동통신 총 개통가입자 수는 1,472,591명이고, 그 중 외국인 가입자 수는 38,265명(2.6%)이며, 외국인 영업 참여 유통점(이하 대리점, 판매점을 합하여 "유통점"이라 한다)수는 대리점 524개점, 판매점 206개점이었다.
- 피심인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관련 조사대상 기간('16.8.1.~10.31.) 중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외국인 영업 참여 판매점에 실 지급된 장려금 평균 수준은 외국인 대상 289,800원, 내국인 대상 279,500원이었다.

다. 조사경위

- '16년 국정감사('16.10.6. 김성수 의원)에서 SKT가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태점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서는 SKT의 외국인 영업정책 및 관련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16.11.18.~12.9.)을 실시하였으며,
- 실태점검 결과, 피심인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 3사 관련 판매점이 외국인 영업을 하면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및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나타남으로 인해 '17.1.16.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과다지원금 :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

< 실태점검 결과 : 장려금 및 과다지원금 지급 내역 (단위 : 건, 원) >

구 분	장려금 수준		과다지원금 지급 건수	과다지원금 지급 수준
	외국인 대상	내국인 대상		
피심인	311,578	294,082	446	154,037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 '16.8.1~10.31. 중 피심인의 외국인 영업실적 등을 토대로 관련 판매점 37개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입자 표본은 피심인의 외국인 영업 총가입건수 38,265건 중 976건 (약 2.6%)이며, 가입유형별로는 신규가입 650건, 번호이동 295건, 기기변경 31건이다.

< 가입유형별 조사표본 구성 (단위 : 건) >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계
	010신규	번호이동		
조사표본	650	295	31	976

나. 행위사실

1) 과다지원금 지급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조사대상 관련 30개 판매점에서 외국인 영업을 하면서 모집한 976건의 판매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 25개 판매점에서 479명(위반율 49.1%)의 가입자에게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2항, 제5항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100분의 15 추가 지원금의 합계 범위를 평균 145,281원 초과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 과다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개, 건, 원) >

구 분	조사대상 건수	과다지원금 지급		과다지원금 평균 수준	위반율
		유통점수	건수		
피심인	976	25	479	145,281	49.1%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외국인 영업 관련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25개 판매점 중 10개 판매점에서 ①신규 153건에 151,357원, ②번호이동 82건에 160,769원, ③기기변경 12건에 81,817원의 가입유형 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합계/평균		010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건수	차별 지원금	건수	차별 지원금	건수	차별 지원금	건수	차별 지원금
피심인	247	151,103	153	151,357	82	160,769	12	81,817

3)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대리점과의 표준협정서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유형별 외국인 가입·모집에 대한 대가로 ①신규 294,727원, ②번호이동

330,094원, ③기기변경 194,211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내려 보낸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 표준협정서 제2조제3항 : 대리점은 본 협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지시·지도에 따라야 한다.

- 피심인이 번호이동 또는 신규 조건에 기기변경 조건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기기변경 조건과의 장려금 차이를 30% 이내 유지 권고 미준수)을 대리점에 지시하고 내려 보낸 것으로 인해, 2)에서처럼 10개 판매점에서 247건에 달하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가 나타났다.

< 피심인의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주요내역 >

구 분	내 용
주력 단말기	갤럭시S6/S7_32/64, 아이폰6S/7S_16/64 등
장려금 항목	①기본정책(25만원), ②외국인활성화(4만원) ③글로벌스토어점(3만원) 등
주력 요금제	599 요금제 등
장려금 수준	① 신규 29만원(도매), ②MNP 33만원(도매), ③기변 19만원(도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1)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 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4조제4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9조제3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다.

- 2) 단말기유통법 제15조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

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5조(과징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대리(복대리 포함) 또는 위탁(재위탁 포함) 관계에 있는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피심인이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즉 과다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함에도,

- 피심인의 관련 25개 판매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심인의 관련 10개 판매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판매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게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차별이 심한 장려금을 내려 보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심인이 관련 대리점에게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차별이 심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10개 판매점에서 '부당한 차별적 지급행위'가 나타났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가입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

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 관련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 이상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내지 나.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가. 기준금액

-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5조 제1 내지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18,071,686,590원이다.

피심인의 외국인영업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38,265명×49.1%) × 평균가입기간 (24.8개월) × 가입자당월평균수익(38,785원) = 18,071,686,590원

-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위반율이 49.1%인 점과 과다지원금 지급 수준, 가입유형별 차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2% 이상 3% 미만)을 적용하되, 피심인이 다른 경쟁 2사에 비해 과다지원금 및 차별적 장려금 지급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중 가장 하한선에 해당하는 2.0%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 이에 따라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위 관련매출액(18,071,686,590원)에 2.0%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361,433,730원이다.

나. 필수적 가중

필수적 가중은 해당 사항 없다.

다. 추가적 가중

추가적 가중은 해당 사항 없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3억 6,100만원(백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 원 김 석 진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